

거창군 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7일
- 제출자 : 거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-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8일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년 12월 13일(제7차 산업건설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6 - 76호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명 재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조례명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할 읍·면장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,
- 마을상수도 시설의 위탁 시 위탁관리업자 지정 및 자격 조건을 명문화하여 위탁관리 업무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명칭을 “거창군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”로 변경
- 마을상수도시설 관리를 관할 읍·면장에게도 시설물의 설치, 운전, 개·보수 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 (안 제4조제1항)
-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위

탁 관리업자를 지정토록 규정(안 제22조제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종 목)

-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명칭 변경(법 제2조)과 함께, 수질검사가 강화(규칙 제4조 제1항) 되고,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규정이 신설(법 제17조의3) 되는 등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법 개정애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많은 변화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-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,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